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28

발의연월일: 2021. 1. 7.

발 의 자:유동수·김병욱·김승원

민형배 · 신정훈 · 안민석

오영환 • 이상헌 • 허종식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안에 개입하거나, 공직자로서의 지위나 권한 등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경우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특히, 최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 슈로 부각되면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들은 여전히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직사 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안 제5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금지(안 제7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다. 가족 채용 제한(안 제8조)

공공기관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는이 법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됨.

라. 수의계약 제한(안 제9조)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됨.

마.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안 제10조)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 ·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바.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1조)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사.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안 제14조부터 제17조 까지)
 -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2)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을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와 함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등의 보상장치를 마련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직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 3. "고위공직자"란 제2호의 공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 나. 국회의원
 - 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라.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상임감사
 - 마.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공 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ㆍ기준(조례ㆍ규칙 및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 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 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 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고위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

체에 대해 적용한다.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고위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 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 체
- 사.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거래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와통상적인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 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해 거래 또는 계약을 하였거나 그 거래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자.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자신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차.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
- 7. "소속기관장"이란 제2호의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근무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공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

- 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는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이해충돌의 방지 및 관리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와 함께 소속 기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거 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 청할 수 있다.
 - ④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고도의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경우
- 2.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 는 폐지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 3.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 4.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6조(사적이해관계자 회피·기피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4 항에 따른 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직무수행 일시 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
- 3. 제1항에 따라 조치하면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의사정족수·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처리 결과를 회피를 신청한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직무수행의 공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 및 통보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금지)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또는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

가를 받는 행위

- 2.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②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공직자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에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외부활동을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직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 2.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에 의해 정무직으로 취임하는 경우

- ②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수의계약 제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소속 고위공직자
 -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 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 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8조(제5조 및 제11조에 관한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22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본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3장 이해충돌 방지 업무의 총괄 등

- 제13조(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 립 및 시행
 - 2. 이해충돌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

집・관리・분석

- 5. 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 제14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3. 국민권익위원회
 -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 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위반행위 등 조사) 위원회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이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 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 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위반행위신고의 처리) 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도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

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

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 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 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신고자"로 본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 2.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 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보상금의 신청 및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는 각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 제18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 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0조의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화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제20조(비밀누설 금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

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야 한다.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 2.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신청의 접수 및 관리
-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 4.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내용의 조사 및 처리
- 5.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 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및 벌칙

- 제23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벌칙) 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 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 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

- 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공무수행 사인을 포함한다)
-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 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20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 록 영향력을 행사한 공직자
-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공직자

-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 록 강요한 자
-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 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⑤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한 공직자(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2.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 2. 제10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 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 3.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에 응하지 않은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1호는

이 법 시행 이후 제공하는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부터 적용한다.

- ② 제7조제1항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 제4조(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